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44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안상훈 · 이성권 · 박성훈

백종헌 • 권영세 • 서일준

박성민 · 최보윤 · 김성원

고동진 · 신동욱 · 이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고용·주거·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맞춤형 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 재정 관련 통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 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요청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 시기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계 시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5조제4항 삭제).
- 라. 국가승인통계로 산출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 중인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관리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 관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 지출 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 마.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업무들에 대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기존 제32조의2에서

보칙(제7장)으로 이동하고 제44조를 신설함(안 제44조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 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 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2의 제목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사회보장지출통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의 현황 관리 및 국제수

준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비용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이하 "사회보장지출통계"라 한다)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재정정보
-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 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보조금관리정보
-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보조금관리정보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세입·세출 정보
-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세입·세출 정보
- 8. 그 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 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 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 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및 분석
 - 4.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5.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u> 삭 제>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 관			
리를 위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			
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u>수 있다.</u>			

<신 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 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 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 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 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 정추계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사회
보장 수준의 현황 관리 및 국제
수준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사회
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비용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통
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신 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이하 "사회보장지출통계"라 한다)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

 램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재

 정정보
-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 리되는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 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

되는 보조금관리정보

-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정보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되는 사회보장정보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 관리하는 세입・세출 정 보
-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로 관리되는 세입·세출 정보
- 8. 그 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 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 또는 정보
-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 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 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 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4.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 5.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